

보도 시점 2026. 7. 12.(일) 12:00 배포 2026. 7. 12.(일) 10:00

“물가불안 조장 탈세자” 세무조사 3,195억 원 추징

- '25.9~'26.6까지 114개 업체 조사종결, 적출금액 7,698억 원, 범칙처분 33건

1 조사 성과

- 국세청(청장 임광현)은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라는, 공동체의 위기를 기회삼아 물가상승을 조장하며 부당한 이득을 누리는 탈세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하고자,
- '25.9월부터 '26.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소득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독·과점, 담합, 가공식품·농축수산물·생필품, 외식 프랜차이즈 등 11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.
- 그 결과, '26.6월까지 114개 업체로부터 3,195억 원을 추징하였으며, 이들 중 추징세액 상위 10개 업체의 세액 합계는 2,480억 원으로 전체의 약 78%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■ 물가안정 세무조사 성과 ■

(건, 억 원)

유형 분류	조사건수			조사성과(종결)		
	소계	종결	진행	적출금액	추징세액	범칙처분(고발)
① 시장의 우월적 지위(독·과점)	10	9	1	3,187	1,809	18(11)
② 담합(가격·입찰)	11	10	1	225	98	-
③ 외환 부당유출, 할당관세 등	16	15	1	2,378	585	-
④ 가공식품, 농축수산물, 생필품 등	34	34	-	473	204	5(2)
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	29	29	-	1,115	359	9
⑥ 예식, 장례 등	17	17	-	320	140	1
합 계	117	114	3	7,698	3,195	33(13)

* 1차~4차 물가 관련 탈세자 세무조사 대상들을 6개 유형으로 분류

2 주요 세무조사 사례

□ 물가안정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한 주요 탈루내용은 다음과 같다.

[유형1·2·3] 시장기능 훼손 및 정부정책 악용 탈세자

-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조사대상 업체는 과점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가격을 약 5% 인상하였다.
 - 조사결과 해당업체가 입점 및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유통업체에 접대성 판매장려금 200억 원가량 지급하고 물류비로 변칙 회계처리하였으며,
 - 외주용역비 과다지급 등의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약 150억 원의 이익을 분여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약 200억 원을 추징하였다.
- 다른 식품 제조업체는 주요 원재료의 국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,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가격을 인상하며 호황을 누렸다.
 - 조사결과 해당업체는 거래처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 인건비 약 300억 원,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고가 매입한 원재료비 약 10억 원 등을 부당하게 비용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어 약 90억 원을 추징하였다.
- 또 다른 식음료 제조업체는 물량상한을 우회해 할당관세 혜택을 누리고자 퇴직 직원 명의의 도관업체를 내세워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,
 - 관련 매입세액 공제금액 70여억 원을 추징하였으며,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등 조세범칙행위에 가담한 행위자들에 대해 범칙처분(2건 고발, 7건 통고처분)을 하였다.
- 공공기관 입찰담합에 가담하였던 한 업체는 불법적으로 지출한 담합 수수료 수억 원,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비전담 연구원 인건비 약 80억 원 등이 확인되어 약 40억 원을 추징하였다.

[유형4·5·6] 서민 물가부담 가중 탈세자

- 대형 F&B 프랜차이즈인 조사대상 업체는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‘슈링크플레이션’으로 가격인상 효과를 누렸다.
 - 조사결과 해당 업체가 원재료 매입과정에 특수관계법인을 끼워넣어 고가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고,
 - 홍보비 20여억 원을 대납하여 계열사를 부당지원 하는 등 법인소득 약 700억 원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억 원가량 추징하였다.
-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인 조사대상 업체는 수입 원두가격 상승을 핑계로 커피 가격을 인상하였다.
 -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원재룻값 등 비용부담 증가로 가격을 인상하였다는 해명이 무색하게 사주일가에 가공급여 등으로 20억 원가량 유출하고,
 - 사주 자녀는 사주로부터 부동산·주식 취득자금 약 40억 원을 지원받고도, 증여세를 무신고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약 40억 원을 추징하였다.
- 생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조사대상 업체는 제품가격을 수십% 인상하여 폭리를 취하면서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거짓 세금계산서 10여억 원을 수취하는 등 법인소득을 30억 원가량 탈루하여 약 20억 원을 추징하였다.
- 유명 상조업체인 조사대상 업체는 기존과 유사한 상품을 신규 출시하고 기존 상품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였다.
 - 조사결과 해당 업체가 공동경비를 초과 부담하여 계열사에 약 30억 원을 부당지원하고,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 자녀, 가사도우미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0여억 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약 50억 원을 추징하였다.

- 국세청은 물가안정이 민생의 최우선이라는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며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.
- 특정 기업들의 지배력이 우월한 독·과점 업종, 담합행위가 빈번한 업종 및 민생밀접 업종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,
- 경제여건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면서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,
- 조사 집행 시에는 일시보관, 금융계좌 추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, 조세포탈,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「조세범 처벌법」에 따라 처벌받도록 단호히 조치하겠다.
- 앞으로도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, 불공정행위로부터 민생경제를 보호하고 조세정의의 바로세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조사국 조사2과	책임자	과 장	장성기 (044-204-3601)
		담당자	사무관	손태빈 (044-204-3602)
		담당자	서기관	고당훈 (044-204-3617)
<협조>	조사1과	책임자	과 장	구성진 (044-204-3551)
		담당자	서기관	조현선 (044-204-3552)
<협조>	국제조사과	책임자	과 장	김태형 (044-204-3651)
		담당자	사무관	조흥기 (044-204-3652)
<협조>	세원정보과	책임자	과 장	윤순상 (044-204-3701)
		담당자	사무관	김이준 (044-204-370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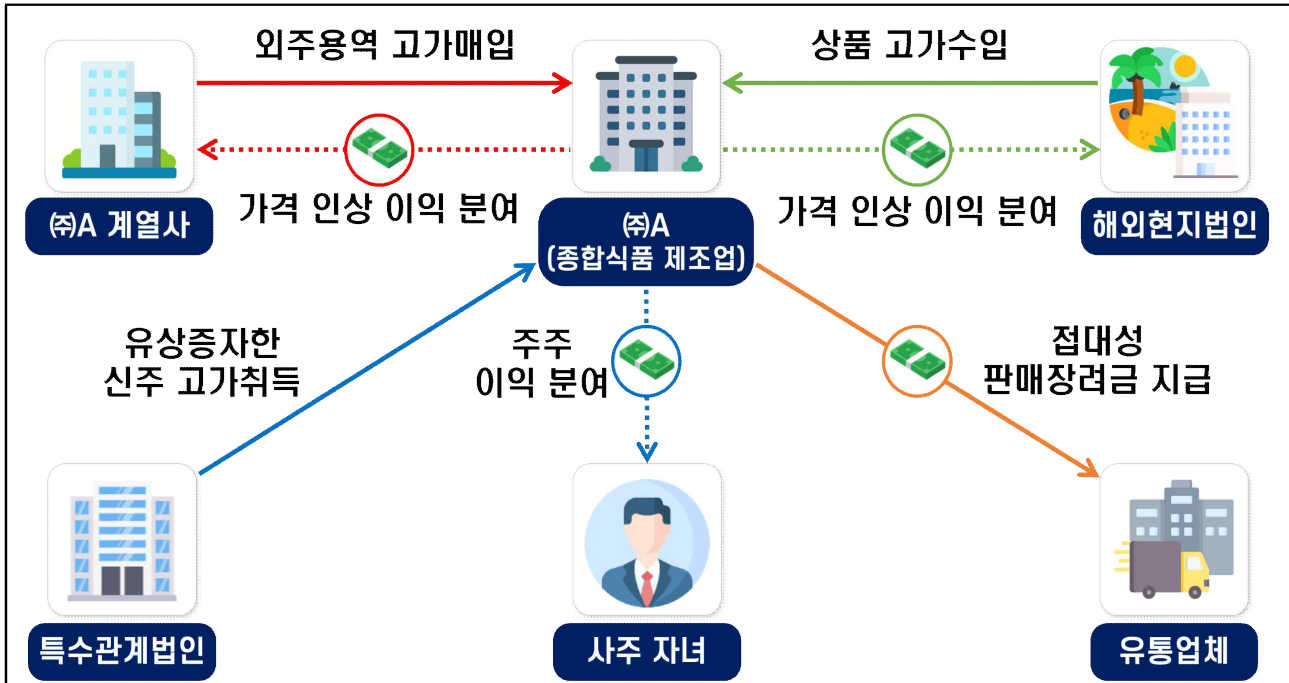
붙임

주요 조사 사례

사례 1

[독·과점]

계열사로부터 상품과 외주용역을 고가에 매입하여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을 나누고, 유통업체에 접대성 장려금을 지급한 종합식품 제조업체



□ 주요 조사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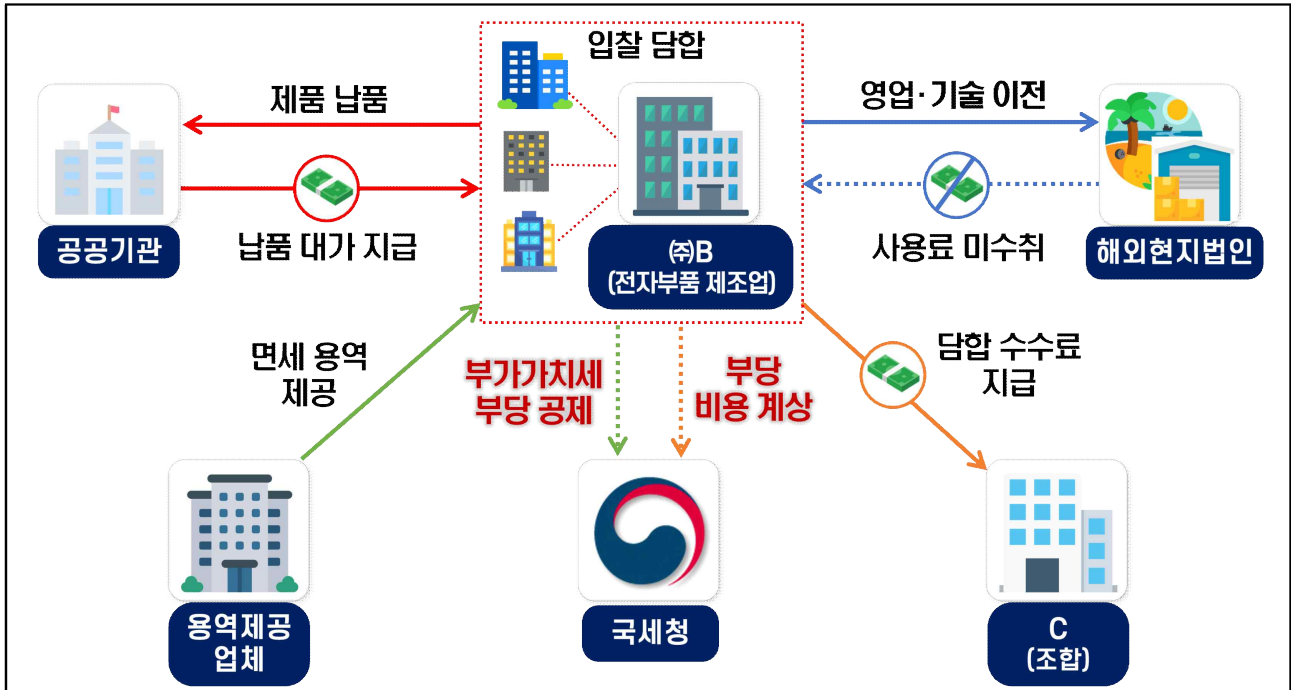
- (주)A는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로, 시장 독·과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제품 가격을 약 5% 인상
- (주)A는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계열사로부터 외주가공용역을 제공받으며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,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고가에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0억 원의 이익을 분여
 -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 입점 및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접대성 판매장려금 약 200억 원을 지급하며 물류비로 변칙처리
- (주)A는 특수관계법인의 유상증자에 단독 참여하여 신주를 고가에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주주인 사주자녀에 수억 원의 이익을 분여

□ 조사결과

- 용역비 과다지급 및 불균등 증자 참여 등의 방법으로 계열사와 사주자녀에게 이익을 분여한 (주)A에 약 200억 원 추정

사례 2
[입찰담합]

담합 관련 수수료 비용 계상 및 해외 현지법인 부당지원, 면세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당 공제한 전자부품 제조업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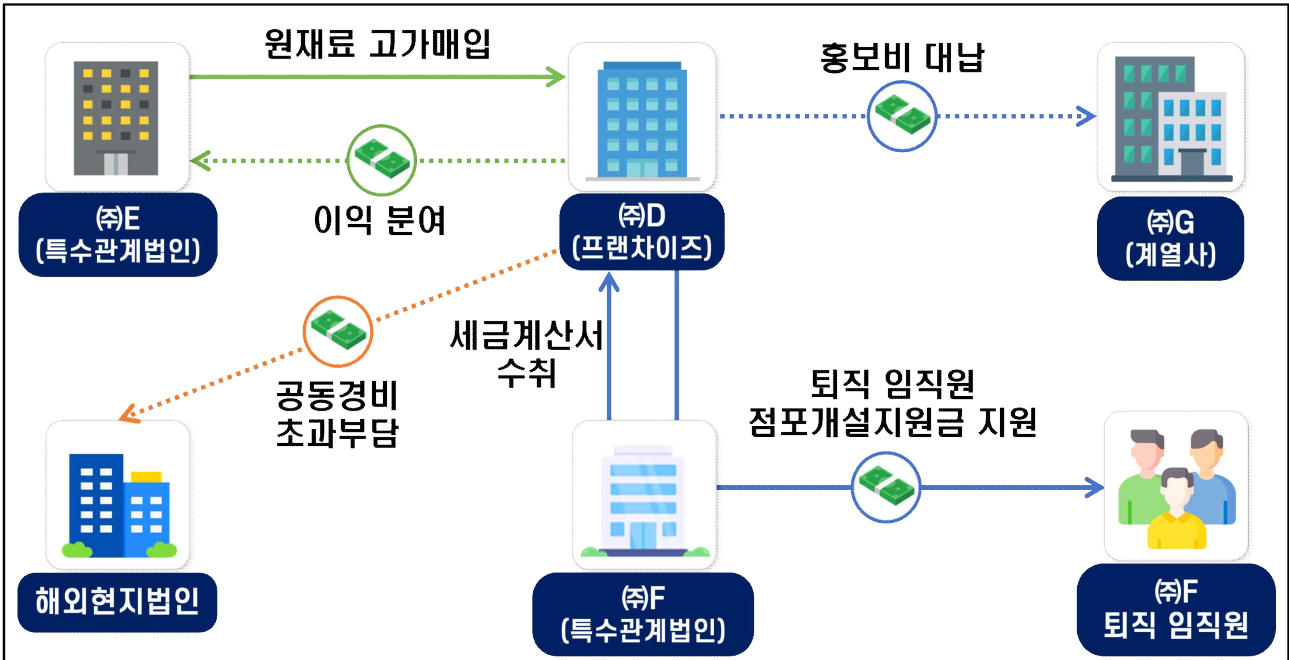
□ **주요 조사내용**

- (주)B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공공기관 입찰에서 낙찰받을 물량 배분을 합의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등 담합행위로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
- (주)B는 입찰 담합과 관련하여 C에게 수수료 수익 원을 지급한 뒤 비용으로 부당계상하고,
 - 영업·기술을 이전 후 사용료 수익 원을 미수취하거나,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하는 방법으로 해외현지법인을 부당지원
 - 면세 용역을 제공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수익 원을 부당하게 공제하고, 연구업무 비전담직원의 인건비 약 80억 원을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부당계상
- 사주 일가는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·백화점·유형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

□ **조사결과**

- 담합 수수료 부당 계상, 해외현지법인 부당지원, 면세 용역 부가가치세 부당 공제, 법인 신용카드 사적 사용 등 (주)B에 약 40억 원 추정

사례 3
[프랜차이즈] **매입단가를 조작하여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고 이익을 분여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**



□ **주요 조사내용**

- 대형 F&B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(주)D는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‘슈링크플레이션’으로 실질적 가격인상
 - 특수관계법인 (주)E로부터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하여 20여억 원의 이익을 분여
- 또한, 특수관계법인 (주)F의 임직원이 퇴직 후 가맹점 개설시 점포개설지원금을 지원하여 비용 약 50억 원을 과다계상하고,
 - 스포츠구단과 공식 파트너십 계약에 따른 공동 광고비를 단독으로 부담함으로써 해외현지법인에 10억 원가량 부담지원
 - 특정계열사 (주)G를 홍보하는 기사에 대한 홍보비 약 20억 원을 대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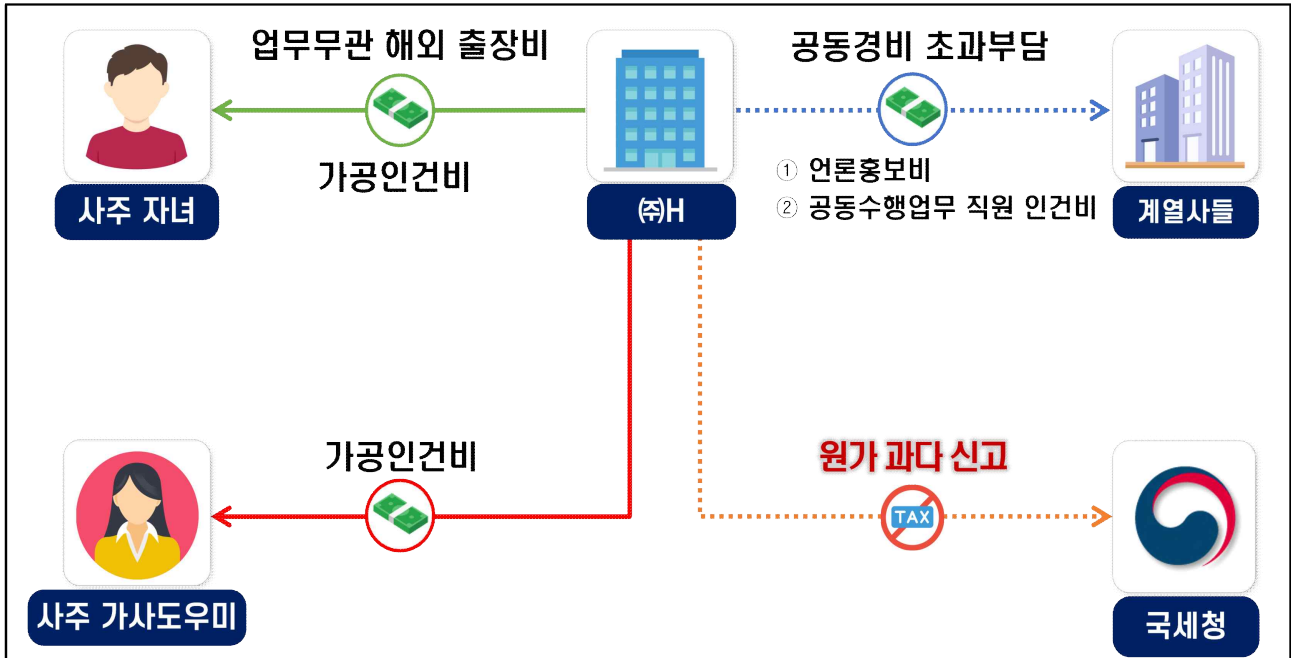
□ **조사결과**

-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원재료를 고가매입하고, 점포개설지원금, 광고비 등 경비를 과다계상한 (주)D에 약 200억 원 추정

사례 4

[예식·장례]

언론홍보비, 공동수행업무 직원 인건비 등 공동경비 초과부담하고,
사주 자녀에게 업무무관 해외 출장비를 지급한 상조회사



□ 주요 조사내용

- 홈쇼핑 등을 통해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상조회사인 (주)H는 기존과 유사한 상품을 신규 출시하고 기존 상품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수십% 인상
 - 계열사 공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인건비, 언론홍보비 등 공동경비 약 30억 원을 초과부담하여 계열사들을 부당지원
- 또한, 실제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의 자녀에게 급여 등 인건비와 해외 출장비 명목으로 수억 원 지급하고,
 - 사주가 사적으로 고용한 가사도우미 인건비 수억 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

□ 조사결과

- 공동경비를 초과 부담하여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, 사주 자녀와 사주의 가사도우미에게 가공경비를 지급한 (주)H에 약 50억 원 추정